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747
Fax : +82-70-8799-8774
E-mail : leehj@krs.co.kr
Person in charge :
LEE Hyunju

No : 2025-IMO-15
Date : 2 October 2026

제목 : SEEMP Part II-III 규제 이행을 위한 개정 안내

1. 개요

MARPOL 부속서 VI 규정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SEEMP Part II (연료유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 및 **SEEMP Part III (운항 탄소집약도 관리 계획)**을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의 검증 및 승인을 받아 **적합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와 함께 본선에 비치해야 합니다.

* SEEMP Part III의 경우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 여객선, 가스운반선, 일반화물선, LNG 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여객선, 탱커에 한하여 적용함.

이와 관련하여, MEPC 81차 및 82차 회의에서 채택된 후속 개정(Res. MEPC 388(81) 및 395(82))에 따라 IMO DCS의 향상된 세분화를 적용하기 위한 SEEMP Part II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MARPOL 부속서 6 제 28규칙에 따라, SEEMP Part III의 첫 번째 3년 이행계획(2023~2025)이 종료되어 **2026년~2028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3개년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2. IMO DCS 데이터 세분화 반영을 위한 SEEMP Part II 제·개정

2.1 개정 요구사항

IMO MEPC는 수집된 데이터의 향후 규제 개발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규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세분화**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MARPOL 부속서 6의 부록 IX**가 개정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결의서 MEPC.385(81)**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SEEMP 개발 지침서(결의서 MEPC. 395(82))**와 **주관청 검증 지침서(결의서 MEPC.389(81))**가 개정되었고, 더불어 구체적 적용 해석을 포함한 지침(**MEPC.1/Circ.913**)을 승인하여 업계의 이행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MEPC 83차에서는 ‘Under way’ 및 ‘Not under way’의 정의를 도입하기 위한 SEEMP 개발 지침서 **개정안(결의서 Res.MEPC.401(83))**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앵커링·항만대기·정박 시 연료

소모량을 제외한 항해·추진 기반 CII 지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Under way'는 전속 항해 시작 시점(FAOP, Full Ahead on Passage)부터 항해 종료 시점(EOSP, End of Sea Passage)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Maritime Single Window 지침서 (FAL.5/Circ.42/Rev.3)의 정의를 따릅니다.
- 'Not under way'는 항해 종료 시점(EOSP)부터 전속 항해 시작 시점(FAOP)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사는 향후 항해 데이터 관리 시 Under way와 Not under way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특히 **Not under way**에서의 연료소모량은 2026년부터 별도 관리·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세분화 적용에 따른 수집 항목(부록 IX)의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SEEMP Part II & III 반영 필요
유종별 총 연료유 소모량	(좌동)	(좌동)
(추가)	소모원 형식(consumer type)별, 유종별 총 연료유 소모량: 주기관, 발전기, 보일러, 기타 기기	소모원 형식별 소모량 측정 방법론
(추가)	항해중이 아닐 때, 소비자 형식(consumer type)별, 유종별 총 연료유 소모량	
이동 거리	(좌동)	(좌동)
(추가)	적재 이동 거리(자발적 수집)	적재 이동 거리 수집 방법론 (자발적 수집)
운항시간	(좌동)	(좌동)
(추가)	공급된 총 육상 전력량	공급된 총 육상 전력량 측정 방법론 (해당하는 경우)
MARPOL 부속서 VI 제 28규칙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적용사항:		
(추가)	총 운송 업무량	총 운송 업무량 수집 방법론
적용되는 CII 지표: AER, cgDIST 연간 운항적 CII 서용값 연간 운항적 CII 계산값(보정 전/후)	(좌동)	(좌동)
(추가)	혁신적인 기술의 설치·해당 시): A, B-1, B-2, C-1, C-2	해당없음
운항적 탄소집약도 등급: A, B, C, D, E 시범 목적의 CII(자발적): EEPI, cbDIST, clDIST, EEOI	(좌동)	(좌동)

* MEPC.1/Circ.896 참조

2.2 적용 및 조치사항

이와 같은 협약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모든 해당 선박은 **향상된 세분화 요건을 반영하여 SEEMP Part II를 개정**하여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국 또는 인정기관의 **검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발행되는 CoC는 검증 완료된 SEEMP Part II와 함께 본선에 비치되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되는 **DCS 및 CII 데이터는 개정된 세분화 기준에 따라 수집·보고**되어야 합니다.

단, 기국 지침에 따라 **강제 적용** 및 그 외 **자발적으로 조기 이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한 상세 사항은 한국선급이 2024년 11월에 발행한 『IMO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베이스의 향상된 세분화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적용 지침 안내(Rev.1)』 기술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차기 3개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SEEMP Part III 제정

3.1 규정 요구사항

SEEMP Part III의 첫 번째 3개년 이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선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2023년이 3년 이행 계획의 첫 해가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이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이행연도의 다음연도가 3개년 이행 계획의 첫 해가 되도록 새로운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1) 2023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은 인도 당해연도가 3개년 이행 계획의 첫 해가 됩니다.
- 2) 202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 인도된 경우는 다음 해가 3개년 이행 계획의 첫 해가 됩니다.
- 3) 2023년 1월 1일 이후 선박의 회사 변경, 기국 변경 그리고 회사 및 기국 동시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가 3개년 이행 계획의 첫 번째 이행연도가 됩니다.

3.2 적용 및 조치사항

모든 해당 선박은 **2026년부터 2028년**을 3개년 **이행계획**으로 포함하는 **SEEMP Part III**를 수립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국 또는 인정기관의 검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발행되는 CoC는 검증 완료된 SEEMP Part III와 함께 본선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차기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과거 3년(2023~2025)동안의 CII 요구값(Required annual operational CII), 달성값(Attained operational annual CII) 및 보정 전/후 CII 등급
- 연차별 CII 요구값
- 연차별 CII 달성 목표값(Targeted operational annual CII) 및 달성 목표 등급(Target CII rating)
- C등급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이행조치
- 자가평가(Self-evaluation) 및 개선(Improvement) 절차

과거 3개년 이행계획에 대해 승인된 SEEMP Part III 내 Corrective Action Plan(CAP) 이행기한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해당 SEEMP Part III 및 CoC를 차기 3개년 이행계획을 위한 신규 승인본과 함께 선박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EMP Part III 이행 및 검증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선급이 2025년 3월에 발행한 『SEEMP Part III 검증 및 Company Audit 절차 안내서(Rev.1)』 기술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사 준비 및 지원사항

한국선급은 회원사 및 해운업계가 개정된 규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 권고사항과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 준비 권고사항

- **기한 내 제·개정 이행:** SEEMP Part II 및 Part III 제·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연말 집중 제출에 따른 검증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 및 조기 제출을 권장합니다.
- **내부 절차 점검 및 개정 반영:** IMO DCS 세분화 반영 및 차기 3개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회사 내부의 데이터 수집·관리 절차와 SEEMP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해 상태 구분 및 보고 준비:** 선사는 항해 데이터 관리 시 Under way와 Not under way를 구분해야 하며, 특히 Not under way 상태에서의 연료소모량은 2026년부터 별도로 관리·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2 지원사항

한국선급은 개정된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SEEMP Part II와 Part III에 대해 **샘플 문서와 KR GEARS 플랫폼 내 SEEMP 개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사는 이를 활용하여 내부 절차 및 선박 운항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 요건에 맞는 계획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Part II:** 최신 개정안 및 세분화 요건을 반영하여 온라인 작성 양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Part III:** MEPC 83차에서 승인된 2027~2030년 감축률이 반영되었으며, 각 선박의 연차별 CII 요구값과 달성값을 자동 산출하고, 차기 3개년 이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 기술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기술팀(krgst@krs.co.kr) : SEEMP Part II 및 III 검증 관련 문의
-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 : 협약 관련 일반 문의

첨부 : SEEMP Part II 샘플(2025 개정본). 끝.

배부처 : 검사원, 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 KR surveyors, Ship owne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

While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technical information, the Korean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nor shall i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technical information.

